

1. 개정이유

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(단위부담금, 교통유발계수)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,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개정(법률 제21814호, 2026. 6. 16., 공포, 2026.12.17. 시행)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규제의 재검토 기준일 연장(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)

- 1)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,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중 단위부담금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등에 대한 재검토 기준일을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함

나. 조례로 정한 산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기간 구체화(안 제17조제3항 신설)

- 1)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경우, 그 산정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기간을 3년으로 함.

다. 산정기준의 세분화 기준 구체화(안 별표 3, 별표 4)

- 1)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는 경우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규모, 용도지역, 기종점통행량 등 입지 특성에 따라,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시설물이 속한 대분

류 내에서 세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정 범위를 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10.1. ~ 11.10., 예정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17년 1월 1일”을 “2027년 1월 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3년 1월 1일”을 “2027년 1월 1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별표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

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표에서 정하는 단위부담금을 시설물의 규모, 용도지역, 기종점통행량 등 입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. 이 경우 단위부담금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
별표 4에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표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용도를 세분화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통유발계수는 그 시설물이 속한 대분류내의 범위에서 정하되,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

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<u>2017년 1월 1일</u> 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① ----- ----- ----- <u>2027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<u>2023년 1월 1일</u> 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<u>2027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<u>시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한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/u>